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42 발의연월일: 2022. 6. 24.

발 의 자:권칠승·고용진·권인숙

김민철 · 김의겸 · 김철민

도종환 · 민병덕 · 임종성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송금·이체 행위만 적용 대상으로 하 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금 이 체를 요구하는 대신 자금을 직접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조 력자를 모집하여 인출·교부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금의 인출·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인출·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라목 신설및 제15조의2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
-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행위임을 알면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	
(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	
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	
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	
함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출
	<u>하도록 하는 행위</u>
<u><신 설></u>	라.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u>행위</u>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	제15조의2(벌칙) ①

사기	기를 목	적으	로	다음	각	호	의
어그	느 하니] 에	해딩	하는	행	위	를
한	자는	10년	ो	하의	징역	결	또
느	1억원	이ㅎ	l 라의	벌금	-에	처	한
디							

1.·2. (생 략) <u><신 설></u>

<신 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상습적으로 <u>제1항</u>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 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1.•2. (현행과 같음)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
는 행위임을 알면서 자금을 인
출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u>④</u> 제1항 및 제2항